

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분과위원회규정 제정안

	현 규정	비고
1. 분과위원회의 구성	1) 회칙 제33조 (분과위원회)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. 2) 대상 분과는 학술, 교육연수, 간행, 편집으로 한다. 3)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폐지 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	
2. 분과위원의 임명과 임기	1) 해당 분과의 집행 이사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 2)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 3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	
3. 분과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과 지원	1) 회칙 제33조 (분과위원회) 제 2항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는 제4조 (사업)과 관련한 본 학회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, 조사, 개발 등의 활동을 한다. - 학술위원회: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회와 토론회의 개최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 - 교육연수위원회: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 - 간행위원회: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 - 편집위원회: 정기학술지 발간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 2) 위원장은 집행이사회와 정기이사회에서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 3) 학회는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, 그 결과 를 총무이사가 총회에 보고한다.	
4. 위원의 혜택	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소정의 회의료를 지급한다. 단,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 1일 교통비를 실비로 추가 지급한다.	